

## 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規約案 및 '95自治福券發行計劃(案)

議案 番號	54
----------	----

提出年月日 : 1995. 3.

提出者 : 大田廣域市長

### 1.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국 자치복권발행 행정 협의회 규약안 및 '95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主要骨子

#### 가.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

- 목 적 : 전국자치복권 발행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명 칭 : 자치복권 발행 시도 행정협의회
- 구 성 :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  
(실무협의회 :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심사담당관)
- 회의운영 : 정기회 (년2회 이상), 임시회 (수시)

○ 기 능

- 복권발행관련사무 대행기관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복권판매 수익금의 자치단체간 배분에 관한 사항
-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복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 수익금의 배분

- 복권의 판매비율, 인구수, 시·군·구수등을 고려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나. '95 자치복권발행 계획안

- 명 칭 : 전국 자치복권
- 발행주체 :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15개시도)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형식 : 즉석식 또는 추첨식(500원권 ~ 1,000원권)
- 발행규모(수익) : 1,000억원 (매출액의 30% → 300억)
- 발행시기 : '95. 7. 1

## 全國自治福券發行 行政協議會 親約(案)

第1條(目的) 이 規約은 地方自治法 第142條 및 地方自治福券發行承認 基準등에 關한 規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全國自治福券發行을 위한 行政協議會의 構成과 그 組織 및 運營등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協議會의 名稱) 協議會는 全國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라고 한다.

第3條(事務所의 位置) 協議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234의 2番地 所在 社團法人 韓國地方財政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에 둔다.

第4條(構成) 協議會는 地方自治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로 構成한다.

第5條(組繼) ① 協議會의 委員은 協議會를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의 企劃管理室長으로 하고, 任員으로 會長 1人, 副會長 1人 및 監事1入을 두되, 會長 및 副會長은 各各 委員中에서 互選하고, 監事는 會長과 副會長이 所屬되지 아니한 地方自治團體 公務員中에서 會長이 指名한다.

② 會長, 副會長 및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任期中에 委員 資格을 喪失하였을 때는 所屬 地方自治團體의 後任者가 前任者의 殘任期間을 承繼한다.

③ 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을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 ④ 會長이 有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⑤ 監事는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의 會計處理 및 第 7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가 共濟會에 委託한 事務의 處理狀況을 監査한다.
- ⑥ 協議會와 實務協議會의 會計 및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과 職員을 둔다.

第6條(實務協議會) ① 協議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協議會를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擔當官 또는 投資審査擔當官으로 實務協議會를 構成·運營한다.

② 實務協議會의 委員長(이하 “實務委員長”이라 한다)은 會長이 所屬된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擔當官 또는 投資審査擔當官으로 한다.

③ 實務協議會는 協議會 上程案件에 對한 事前 檢討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한다

第7條(機能) ①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協議·決定한다.

1. 福券發行關聯事務의 代行機關選定 및 委託契約締結에 關한 事項
2. 全國自治福券 販賣收益金の 管理 및 地方自治 團體間 配分 등에 關한 事項
3. 福券의 販賣 및 弘報에 關한 事項
4. 其他 全國自治福券 發行 및 事務管理등에 必要한 事項

② 協議會는 效率的인 事務處理를 위하여 第1項 各 號의 事項을 實務委員會에 委任하거나, 第2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共濟會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第8條(會議) ① 協議會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② 定期會議는 每年 上半期와 下半期에 各各 1回 召集하고, 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委員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때에 召集한다.

③ 實務協議會는 會長 또는 實務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實務委員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때에 召集한다.

④ 內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協議會 또는 實務協議會의 開催를 勸告할 수 있다.

⑤ 會長은 協議會開催後 14日以內에 開催結果를 內務部長官에게, 實務委員長은 協議會의 上程案件에 對한 事前檢討意見과 協議會가 委任한 事項에 對한 處理結果를 協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9條(協議方法등) ① 協議會에 上程된 案件에 對한 合意는 協議會 또는 實務協議會 構成委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會長 또는 實務委員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 監事는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다만, 議決에 는 參加할 수 없다.

第10條(未合意事項 調整등) ① 協議會에서 2回以上 協議하여도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協議會의 調整要求가 있을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② 協議會를 構成한 關係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事項이나 第1項의 規定에 의거 內務部長官이 調整한 事項에 對하여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第11條(收益金の 管理運營 및 配分) ① 全國自治福券 販賣收益金の 管理運營과 地方自治團體別 配分은 協議會가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販賣收益金を 配分하고자 할 境遇에는 福券販賣額, 市郡區數, 人口數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行事紀念福券을 當該行事와 關聯된 地方自治團體와 共同으로 發行하는 境遇의 販賣收益金の 配分은 發行關聯地方自治團體間의 合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第12條(事務處理등) ①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는 會議錄을 作成,管理 하여야 한다.

②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 事務處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 關係公務員의 參席 및 意見 開陳을 要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請을 받은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3條(財務會計등) ①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 運營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經費는 協議會를 構成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가 共同으로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協議會에서 따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할 수 있다.

② 會長은 會計事務處理와 全國自治福券發行 事務處理에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別途로 公務員을 任命하거나 參與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請을 받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④ 協議會 및 實務協議會의 會計事務處理狀況은 每年 첫번째 會議時 幹事가 報告하여 協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4條(親約 改正) 이 規約의 改正은 協議會 委員 過半數의 發議와 委員의 3分の 2以上の 贊成으로 한다.

第15條(補則) 이 規約에 規定된 事項以外에 協議會 運營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協議會에서 따로 定할 수 있다.

## 附 則

이 規約은 告示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95 全國自治福券發行 計劃案

- 發行主體 : 全國自治福券發行 行政協議會  
(1 特別市, 5 廣域市, 9 道)
- 販賣地域 : 全 國
- 發行形式 : 卽席式, 500원券
- 發行規模 및 收益 : 1,000億 (賣出額의 30%, 300億)
- 發行時期 : '95. 7. 1

### ※ 自治福券 類型

종 류	전 국 자 치 복 권	행 사 기 념 복 권
발행주관	자치복권발행시도 행정협의회	행사주체 자치단체
판매구역	전 국	자치단체 행정구역
액면금액	500원 ~ 1,000원	500원 ~ 1,000원
형 식	추첨식, 즉석식, 혼합식	
복권발행 및 판매	은행대행, 시중소화	은행대행, 시중소화 (자치단체 직판가능)
수 익 금 배 분	협의회규약이 정함	당해 행사비 충당 잔액 공익사업기금 재원